

영등포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4. 16.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363호로 2018년 4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전기자동차, 백세카드 사업에 참여 중인 대표자 및 모범 · 유공  
납세자의 주차요금 감면규정 등을 마련하여 이용구민의 편의  
증진 및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조항 삭제(안 제2조의2, 안 제26조의3)
- 나. 전기자동차 주차 전용구획 설치 기준 신설  
(안 제20조의3, 안 별지 제10호서식)

다. 조례에 인용된 법령 개정(안 제3조제8호, 안 제5조의2,  
안 제 20조, 안 제21조의3, 안 별표1 비고란 제6호)

라. 주차요금 면제·감면 대상 확대

(안 별표1의 비고란 제9호, 제23호, 제24호 )

마.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주차장법」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등에서 위임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한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조문과 맞게 정비하고 또한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기준 정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차량

이용자, 백세카드 참여 사업장 대표자, 모범 유공납세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의2와 안 제26조의3에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위임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정비하였으며
- 안 제3조의8, 안 제5조의2제1항, 안 제20조, 안 제21조의3 및 안 별표1 비고란 제6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 안 제20조의3은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소속기관 청사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설치기준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에 맞게 정비하고 안 별지 제10호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27조 및 안 별지 제9호 서식의 제목을 “여행주차장”에서 “여성우선 주차장”으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또한 안 제27조의 조문을 제20조의2로 정비 하였으며
- 안 별표1의 비고란 제9호, 제23호, 제24호에서는 각각 모범 유공납세자, 전기자동차 이용자, 백세카드 사업 참여업소 대표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항목을 각각 신설 정비한 것으로
- 이는 최근에 우리구에서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및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해 주는 내용을 반영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조례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효행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없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상위법 조문과 불일치한 조례 인용

조문을 일치되게 정비 하였으며 또한 전기자동차 주차 전용구획  
설치 기준 신설과 정부 및 구 주차장 시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  
기 위하여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등의 조항을 신설 정비하는 조  
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용자 및 보조금 미 반환시 강제징수 조항이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조항으로 삭제됨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  
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  
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  
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  
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  
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22.]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  
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  
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  
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전문개정 2010.3.22.]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  
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  
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1.9.29., 2013.5.16., 2013.10.4., 2016.5.19., 2016.7.14.>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2.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

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금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목적지 전철역장이용확인 혹은 버스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인근에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

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 ③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4.]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과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 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개정 2018.3.29., 시행 2018.10. 1.>